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朴芝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02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0.

발 의 자 : 朴芝源 · 윤준병 · 안호영
임오경 · 문대림 · 이춘석
김남근 · 권향엽 · 허영
박희승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·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장의 검토·회신 의무가 없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소관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는 기본계획의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투자환경 및 개발수요의 변화에 따른 관계기관의 계획 변경 수요가 적시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개발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여부와 사유를 통보하

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 변경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).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사회적·경제적 여건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청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⑤ 새만금청장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여부와 사유를 요청을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⑥ 제4항에 따른 요청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③ (생략) ④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. <신 설> <신 설>	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사회적·경제적 여건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청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⑤ 새만금청장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여부와 사유를 요청을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⑥ 제4항에 따른 요청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